

# 서울고등검찰청 결정

사 건 99 년 불항제 683 호

피항고인 "별지와 같음"

항 고 인 "별지와 같음"

불기소처분 서울지방검찰청 98형제 62869호

죄명 : 가. 외국환관리법위반  
나. 증권거래법위반

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

이 유 이 항고사건의 피의사실 요지는 검찰주사 작성의 고발직접상황보고서의 기재와 같고 불기소이유는 불기소처분검사가 작성한 불기소결정서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,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999 년 8 월 6 일  
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대리  
검사 이 재 순

검 사 장

차 장 겸 사

부 장

항 고 인  
통 지

압 수 물

수임인

위 등본임  
서기 1999년 8월 6일  
서울고등검찰청

### 피 항 고 인

1. 가,나 이 건 회
2. 가,나 윤 종 용
3. 가,나 손 욱
4. 가,나 이 형 도
5. 가 이 대 원
6. 가,나 삼성전자주식회사
7. 가,나 삼성전관주식회사
8. 가,나 삼성전기주식회사
9. 가 삼성자동차주식회사

### 항 고 인

1. 김 은 영
2. 김 기 식
3. 이 승 회

담당부서	사 건 과
책임자	유진광
담당자	박찬수
연락처	530-3252

## 서울고등검찰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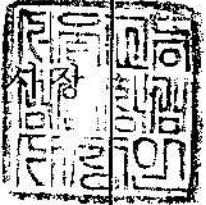
(530-3252)

발행번호 859 호

1999 8. 16.

수신 김은영 귀하

발신 서울고등검찰청




제목 **항고기각이유고지**

귀하가 청구한 항고기각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.

① 사 건 번 호	1999 불항 683호	
② 항 고 인 성 명	김은영 외 2	
피항고인	③ 성 명	별지와 같음
	④ 주민등록번호	1. 2. 3. 4. 5.
⑤ 죄 명	가. 외자도입법위반 나. 외국환관리법위반 다. 증권거래법위반	
처 분	⑥ 년 월 일	1999. 8. 6.
	⑦ 요 지	항 고 기 각
⑧ 항고기각 이유 (별첨과 같음)		

별지

## 피 의 자

1. 가,나,다. 이 건 회
2. 가,나,다. 운 종 용
3. 가,나,다. 손 욱
4. 가,나,다. 이 형 도
5. 가,나. 이 대 원
6. 가,나,다. 삼성전자주식회사
7.  가,나,다. 삼성전관주식회사
8. 가,나,다. 삼성전기주식회사
9. 가,나. 삼성자동차주식회사